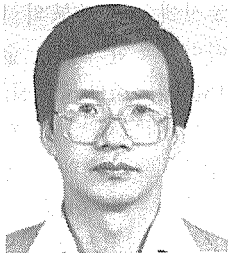


研究開發과 國內外 特許 活用



李 氣 盛
特許庁 審査 4 局長

발명촉매 내지
기술개발 보호의 제도적
장치인 특허제도의 재인식과
국내외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기업내의 연구개발 능력 제고와
이를 통한 제품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바탕으로
보호무역의 물결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선진제국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증대와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국내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룩하여야겠다.

1. 서론

국내경제가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을 배경으로 한 노동집약적 産業發展과 지속적인 수출증대 政策에 힘입은 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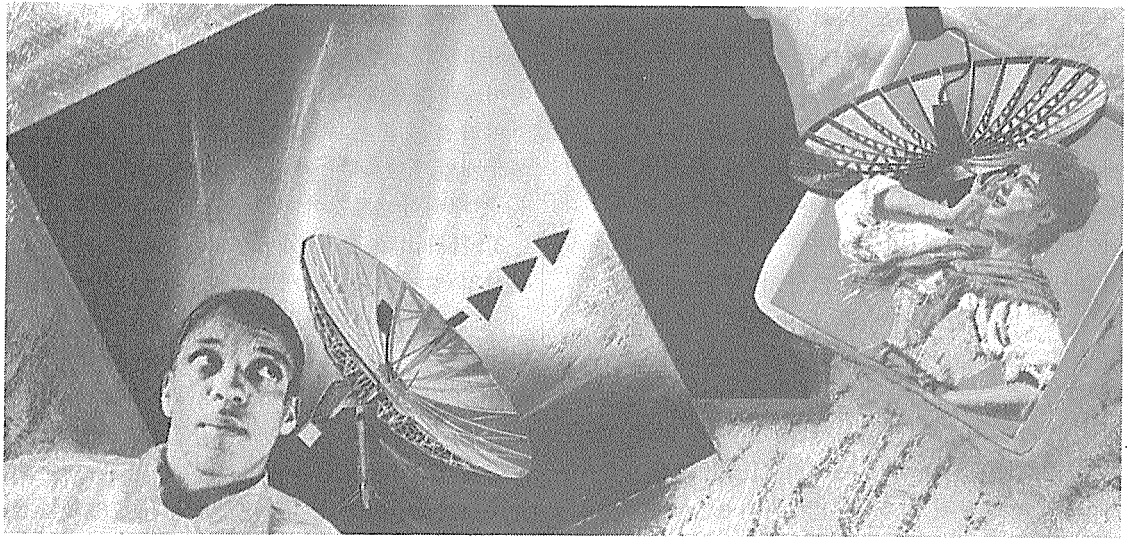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政策과 核心 技術 移轉을 거부하는 技術保護主義 경향은 우리 産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障壁인 것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값싼 제품의 수출은 後發開途國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게 비교 우위를 상실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半導體 産業은 日本의 반도체 대메이커들의 덤핑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IBM 社의 철저한 기술 봉쇄로 인하여 국내의 컴퓨터 업체가 成敗의 갈림길에서 苦楚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첨단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의 문제가 곧 국내 산업 발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特許에 관한 제반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 안목으로 그 對策을 강구함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特許權의 침해로 인하여 수출에 지장을 받는 事例가 별로 없었던 것은 수출상품의 特許權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해외 시장을 독점할 만큼 質·量的인 면에서 선진국 제품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연구투자 증대로 기술이 향상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수출 전략이 전환되어 감에 따라 선진국들은 知的 所有權 및 物質 特許制度 실시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은 通商關稅法(GSP), 偽造 商標 防止法,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半導體 技術 保護法 등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自國의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特許의



특허제도의 재인식 및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겠다.

중요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고 국내외 특허 활용 실태의 분석을 통해 特許의 효율적인活用 方案에 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2. 研究開發과 特許의 重要性

1) 研究開發의 문제점

세계는 치열한 첨단기술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半導體를 주축으로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主軸으로 한 情報産業, 遺傳子 조작을 中心으로 하는 生物 工業, 파인세라믹스, 기능성高分子 등의 新素材 産業과 太陽에너지 및 核融合의 에너지 기술등은 오늘날 技術 革新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산업으로서 서기 2천년대에 가서는 전세계 산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基幹産業으로 위치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나름대로 2천년대에는 선진 과학 기술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목표아래 고급 두뇌 양성 등 각종 정책을 立案하고 있고, 국내 산업계는 국제 상황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해 70년대 후반부터 企業 附設研究所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연구 활동의 수행을 위한 체제 정비와 연구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연구 투자비, 연구원이 적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基礎 技術의 消化, 改良과 尖端 技術 開發 등 연구 활동은 의욕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특히 대단위 과학기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忠南 大德研究團地 조성으로 우리의 연구 개발 의욕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서울大學校에 설립된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産學協同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 개발의 現實態를 깊이 살펴보면 몇개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自体 研究所를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술개발부를 설치 운영하는 실정이며 自体 研究所를 설치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연구시설의 미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研究員, 그리고 경영인의 인식 부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연구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의 부족은 도입된 기술의 소화 및 토착화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發明特許나 Know how 등 高級技術 축적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2) 特許制度的의 意義

特許制度的의 목적은 發明을 창작한 발명자에게 이를 공개시키는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独占 排他的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二重 開發의 낭비를 막으며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산업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서 特許는 産業과 기술의 중개역 내지 촉매제와 같은 것이다. 종래에는 발명은 개인의 創作 活動에

서 비롯되었고, 特許도 이와 같은 개인발명 보호를 위주로 했으나, 오늘날 발명활동의 대부분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과 관련이 깊어지게 됨에 따라 기업은 自體의 研究所를 조직하고 체계화시켜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기술개발은 기업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여기에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을 더욱 진밀하게 연결시켜주는 특허제도의 기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現代의 資本主義 自由經濟에서 정당화된 技術 独占權을 제공하는 것이 工業所有權制度이다. 즉, 고급기술의 구체적인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特許明細書는 技術 公開와 財産 權利의 兩面性을 지닌다. 따라서 工業所有權制度가 고도로 발달된 기술 선진국에게는 이 독점배타적 권리가 합법적인 기술무기로 둔갑하여 開發途上國에게 独占權을 行使토록 하는데 악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이 제도와 공개된 특허자료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에 활력을

줄 것이며 외국기업의 하청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전자산업의 技術 革新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폭넓은 特許 情報의 활용으로 연구개발의 성과가 헛되지 않게 다각적인 연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3) 特許出願 動向 分析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 활성화에 따라 특허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년동안 出願된 工業所有權은 모두 6만 4,030건으로 83년의 5만 5,808건보다 14.7%인 8,222건이 늘어났다.

이를 權利別로 살펴보면 特許가 8,633건으로 83年對比 35.0%, 實用新案 1만 4,765건으로 26.8%, 意匠 1만 5,869건으로 13.8%, 商標가 2만 4,763건으로 3.3%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國人의 特許出願件數가 內國人的 경우보다 훨씬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내·외국인별 특허 출원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연도	한 국					일본	미국	서독	스웨덴	브라질	캐나다
		80	81	82	83	84						
내국인출원		186	232	1,556	1,599	1,997	227,708	59,391	31,658	4,283	2,302	2,017
외국인출원		1,446	1,576	4,368	4,785	6,636	24,977	44,312	15,445	2,958	4,900	23,690
연간출원		1,632	1,808	5,924	6,384	8,633	252,685	103,703	47,103	7,241	7,202	25,707
원국인출원비율(%)		89	87	74	75	77	10	43	33	41	68	92

자료 : 특허청, 「특허통계연보」, 1984. P. 52

WIPO, IP/STAT/1983/A, P. 8-9

주 : 상기통계표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채용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서독, 브라질이며, 실용신안출원건수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이 통계에서 80年度 이전에는 우리기업이 외국의 기술도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아 볼 수가 있겠고, 內國人的 特許出願이 최근 수년간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外國人의 出願件數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은 韓國市場과 우리기술의 발전을 의식하여 外國人의 기술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미국의 外國人 出願比率은 우리와 비교할 때 각각 10%, 43%로 낮은 편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해 특

許·實用新案 出願은 세계 총출원건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약 48만 6,000건이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電子分野의 特許出願件數(實用新案포함, 83년기준)를 살펴보면 82년도보다 35%가 증가한 1,577건으로 特許庁 全體의 特許, 實用出願件數 증가율 7.8%보다 매우 높다.

電子分野 중에서도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컴퓨터분야로서 116% 즉 2.16배나 증가하였고, 半導體 : 59%, 情報記憶裝置(녹음기, VTR 등)

: 46%, 電子回路: 34%, 通信機器: 18%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電子業體의 出願 中 三星電子와 金星社의 出願率이 8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자업체들의 출원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여타 전자업체들도 기술개발에 特許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出願을 증가시킨다면 특성있는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선진국의 技術保護主義 동향

미국 및 EEC 등 주요 선진국들의 自國의 技術保護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0개 新生工業國들을 特許 發明品, 著作品, 商標 등의 無斷 複製 源泉地로 규정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美國 商務省은 컴퓨터, 半導體, 로봇공학, 電氣通信 및 遺傳工學 등 5개분야를 技術 流出防止 對象의 첨단기술로 규정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은 물론, 일본 등의 선진우방국과 한국을 포함한 新生工業國 20여 국가에 대해서 尖端 技術의 수출 통제와 정보 규제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著作權法에 포함시켜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特別 立法과 著作權法 改正을 추진하였다가 미국 등 서구의 최근 추세에 따라 著作權으로 보호할 방침을 정했다.

半導體 分野에 있어서는, 미국의 半導體칩 保護法이 84년 10월 美議會에서 통과되어 半導體 回路 素子의 설계방법인 마스크워크(Mask Work)의 보호 기간을 설계후 10년간 저작권으로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日本 通商省에서도 작년 12월 半導體칩의 回路 設計圖 權利를 보호하기 위한 半導體칩 保護 法案을 발표하고 立法化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물질특허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81년 서울에서 개최된 韓美상공장관 회의에서 우리측에 물질특허 도입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고, 지난 83년 韓美工業所有權會議에서는 한국측이 물질특허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高

級技術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韓美경제협의회의에서도 美側은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포함한 知的所有權 보호 강화의 타협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측의 성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GSP)수혜 대상국으로부터 제외시키는 등 무역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선진국의 外交的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으로는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반적인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을 認定치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특히 물질특허는 세계 95개국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다.

5) 中共의 特許制度 실시

우리의 강력한 수출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공은 經濟開放政策의 일환으로 特許法을 채택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공이 1984년 12월 9일 世界 知的所有權機構(WIPO)에 가입하고 외국인에게도 特許出願의 문호를 개방한 것은 科學技術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간주된다. 中共의 特許法은 中共 國民과 外國人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서방국가와 같지만 社會主義國家인 소련에서는 독점적인 실시권을 국가가 점유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며, 또, 發明 特許에 대해서 審査公開 公告(審査主義)를 채택하고 實用新案은 公告 후 異議申請에 관해서만 實體審査를 하는 無審査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제도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中共特許局은 特許權을 취득한 發明이나 기술개발을 한 개인에게 상당액의 보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中共 特許法 實施 細則」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實施 細則은 特許出願과 特許審査 및 批准, 발명장려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特許法과 함께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의 特許制度 실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부 및 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企業의 國內外 特許 활용

1) 特許管理 전담부서의 활동

최근 기업체의 特許管理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높아져서 1977년 3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特許管理 專担部署 설치 업체수가 4개업체에 專担要員이 2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부터 정부가 기업체내 特許管理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장려한 결과 1983년말 현재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6개 업체로 늘어났고 전담요원만 851명이 되며 기업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업체가 60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大企業 中 한 경우를 보면 特許分野 年間 예산이 약 300억원, 特許 전담요원이 700여명, 年間 출원건수가 우리나라 내국인 출원건수와 비슷한 2만3,000여건(83년 기준)에 달하는 수준임을 볼 때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특허관리 전담부서 설치현황 (1983년말 현재)

업종	설치업체수 (개)	전담요원수 (명)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업체수(개)
전기·전자	47	133	9
기계·금속	72	255	17
화학·약품	78	220	17
섬유	23	81	4
출원발명사 합계	16	49	5
기타	40	113	8
계	276	851	60

*자료 : 특허청, 「특허통계연보」, 1984, p. 28

*註 : 전기·전자 전담부서 설치 업체 중에서 특허전담요원수가 5명 이하인 업체가 43개, 10명이하가 3개사이며, (주)금성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음.

특히 우리나라의 特許 전담부서의 기능은 出願業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술의 중추적 기관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내에서 전담부서의 위치는 몇개의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출원 등록업무에 치중하고 있거나, 연구 개발 부서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동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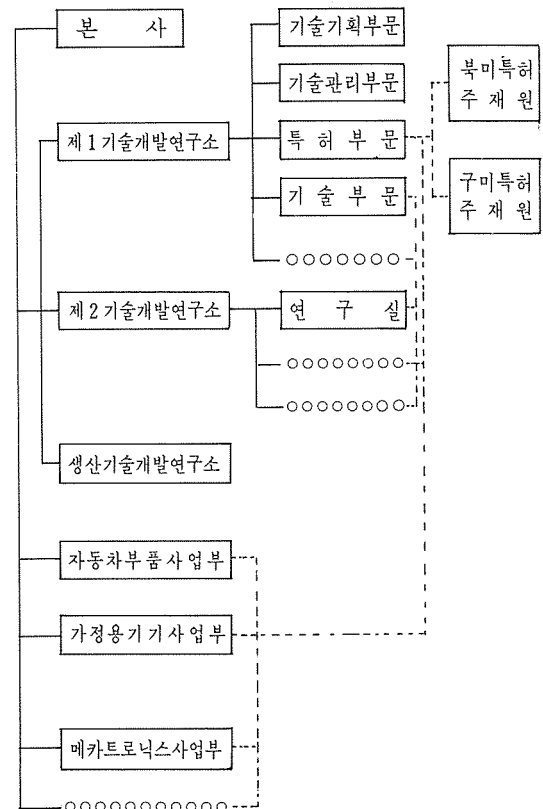
그러나 선진국들은 特許管理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法律 또는 研究開

發 重役に 속하는 特許 전담부서를 最高 經營人 직속으로 두고서 연구개발 및 해외 기술조사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케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기업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特許部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이 회사의 特許部の 주요 업무는 특허전략의 계획·실천에서부터 권리화 업무,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 및 관리업무, 특허조사, 심판, 권리의 保全 및 특허의 보상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부서에 소속되며, 해외에 特許專担 駐在員까지 상주시키고 있다.

도표 1. 일본 아이싱 정기(주) 특허부의 조직도



*자료 :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과 특허」, 1983, Vol. 105, p. 44

국내에도 최근 일부업체에서 特許部를 회장 직속에 편성하거나 연구개발부에 설치하는 기업체가 늘어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으로 特許 관리부서의 활동을 외국 기업의 기술 개발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개발품에 대한 特許 權利化 및 기술 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전략 일환으로

서 특허부의 지위는 수출 및 연구개발 담당부와 동일한 위치에 두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 国内 特許情報의 이용

현재 特許廳에 소장된 資料는 특허문헌, 마이크로 필름, 非特許 技術文獻 등이고 이들은 심사·심판업무에 활용됨은 물론 일반인에게 널리 무료로 열람되고 있다. 또한 지방인에 대한 工業所有權制度의 원활한 보급과 지방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各市·道廳 所在地에 있는 상공회의소 및 공업단지 등 15개소에 지방 특허자료 열람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매년 특허자료 활용 실적은 증가되고 있는바 특허청 열람실 이용 실태를 보면 회사원이 절반 이상이고 학생 이용자수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그러나 연구기관의 이용빈도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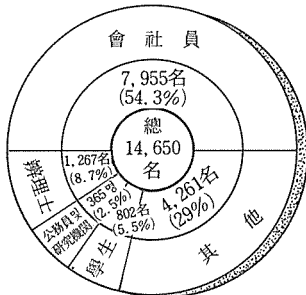
또한 특허청에서는 회사에서 年間 2억원 상당의 특허 관련 기술정보 資料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개발부서의 활용은 미약한 편이다.

앞으로 특허관리 정보로서뿐만 아니라 최신의 첨단기술 참고자료로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연도별 자료 활용 실적

구분 연도	열람		복사	
	인원수	권 수	건수	면 수
1981	10,332	55,698	23,539	92,060
1982	14,303	94,543	47,436	191,268
1983	14,650	114,060	49,572	199,365

'83년도 열람자 분포



자료: (표 2)와 같음, p. 28

주: 2.5% 열람 분포율을 보이고 있는 연구기관은 정부출연 연구소(9개), 국공립 연구소(18개), 기업부설연구소(152개)를 의미함.

선진국의 특허청이나 각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特許情報의 규모는 상당하며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어 과학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도 特許行政 現代化 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자료의 전산화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체의 특허부에서도 특허정보의 전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 그외의 技術文獻 센터로는 산업연구원 내에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있어 국내외의 기술에 관한 刊行物は 물론 국내의 특허에 관한 각종 公報를 비치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 기술의 동향과 특허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특허에 관한 각종 公報와 技術文獻을 비치하거나 情報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3) 海外 特許管理

8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하에서 외국상품의 不公正去來에 대한 提訴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덤핑 판정 시비라든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반도체 對美 수출에 대한 미국 通商代表部(USTR)의 不公正去來 與否調査 착수는 미국 반도체업계를 保護하려는 미국정부의 강한 의사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중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美國 通商代表部(USTR)에서 적용하고 있는 84년 美通商法 第 301條(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치)의 적용과 ITC(美國國際交易委員會)와 관련되는 第 337條의 기능과 관행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전에 상대국의 특허제도 및 관련 통상법 등을 조사하여 수출할 상품이 그 나라 특허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수출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 일본, 서독 등 선진제국은 特許制度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特許管理는 철저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国内企業의 外國 技術導入에 따른 특허문제도 점차 대두되어 특허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동일 製品 生産業體는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외국 특허권자에게 불필요한 로열티 지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해외의 공관을 활용하여 당해국에서 공개되는 최신 특허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첨단 기술의 특허 정보를 위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가나 경영인은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업원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연수에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특허관리 전담 부서 요원을 무역대상국에 주재시켜서 그 나라의 特許文獻과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여야 하고, 새로운 發明品이나 考案品을 개발하면 즉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특허출원하여 法的 保護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조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나라는 特許에 관한 UN산하 전문 기구인 WIPO (世界知的所有權機構)에 1979년 3월 1일에 가입했고 特許出願의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에 1980년 5월 4일에 가입했으며, 외국에 특허출원시 종래에는 개별 국가마다 출원하던 것을 1개국에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계약국(36개국) 다수국에의 同時出願의 효과가 발생하는 국제간의 협약인 PCT(特許協力條約)에 84년 8월10일에 가입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출대상국에 대한 특허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겠다.

4. 결론

우리는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工業所有權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IP O, 파리조약, 국제특허조약(P. C. T)에 加入하는 등 국제화에 대처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外國人의 出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市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국 기업이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 기업에 의한 추격을 예방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들은 이에 만족치 않고 物質特許의 認定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칩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에 不應할 경우에는 貿易法上의 각종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은 앞서 지적인 特許活用に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깊이 검토해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공업소유권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21세기에 가서는 선진공업국과의 特許 紛争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予想되며 輸出 市場 경쟁면에서도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은 特許 制度를 기업의 成長 전략으로 새로이 인식하고, 特許管理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야하며 국내에 공개되는 특허 정보가 연구개발 부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오늘날 輸入自由化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경쟁력의 상실은 海外市場의 상실을 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國內市場도 잃게 된다는 것을 더욱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